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038

발의연월일: 2022. 11. 1.

발 의 자:김선교·성일종·김예지

조수진・김상훈・조경태

강기윤 · 이헌승 · 김정재

박대수 · 김석기 · 권명호

정경희·양금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 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2개월"을 "4개월"로,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8조 앞의 "제3장 벌칙"을 "제4장 벌칙"으로 한다.

제3장(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17조의2(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

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7조의5(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7조의 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 호명령"으로 본다.
- 제17조의6(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

- 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7조의7(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수 있다.
 -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의8(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
	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④ (생 략)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	⑤
른 잠정조치기간은 <u>2개월</u> , 같은	<u>4개월</u>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	
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u>2개월</u>
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	
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	
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u> <신 설></u>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u> <신 설></u>	제17조의2(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

- 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 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경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 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 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 에 출석·귀가 시 동행
-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

 적 순찰

<신 설>

-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7조의5(임시보호명령) ① 판사 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피 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 17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 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 다.
- 제17조의6(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수 있다.
 -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7(항고와 재항고) ① 제1
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
7조의5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 항을 준용한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3장 벌칙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다 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 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하는-----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8(위임규정)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제4장 벌칙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람
- 2. 제17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 호명령 또는 제17조의5에 따 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